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19명, 8급 25명, 9급 7명)을 감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른 지역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우정사업본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2.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북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강원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212”를 각각 “33,15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3,188”을 “33,13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전북특별자치도”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며,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19명, 8급 25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212</u>	<u>33,157</u>	-55
일반직 계	<u>33,212</u>	<u>33,157</u>	-5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188</u>	<u>33,133</u>	-5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2342